

일본

실연자 등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건국대 KU글로벌혁신대학/부교수
권용수

1. 들어가며

일본 문화과학대신은 2021년 7월 19일 문화심의회에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이하 '저작권분과회'라 한다)는 제21기 및 제22기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고,¹⁾ 2023년 2월 「디지털 전환(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제1차 답신)」²⁾을 제출하였다. 이는 2023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미관리저작물 재정 제도 도입 등 저작권 제도 개선에 이바지하였다.

이후에도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심의를 이어갔고, 인터넷 등을 경유한 시장 확대나 콘텐츠 유통의 디지털화·글로벌화 속에서의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25기 저작권분과회는 DX 시대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안에 관계된 논점으로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해당 권리 도입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써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아티스트 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과 음악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표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이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제25기 저작권분과회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심의·논의 내용과 그것을 토대로 성립한 2026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2. 제25기 저작권분과회 심의·논의 내용

제25기 저작권분과회는 2025년 5월 12일~16일 제1회 회의를 시작하였고, 2026년 3월 12일 제3회 회의에서 저작권분과회 보고서³⁾를 공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는 ①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과 ② 향후 디지털 교과서를 염두에 둔 저작권 제도 대응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아래에서는 ①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한다.⁴⁾

1) 著作権分科会,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

2) 文化審議会,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に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答申(案)」(令和5年2月).

3)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令和8年3月12日).

1) 검토 배경 등

일본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연주권(일본 저작권법 제22조)과 공중전달권(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저작물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연주(재생)를 하는 자나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로 공중송신된 것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자는 권리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이하 ‘실연자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상업용 음반의 2차 이용에 관계된 권리로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유선방송에 관한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같은 법 제95조 및 제97조)가 있었다. 그러나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실연 또는 음을 직접·간접적으로 공중에게 들려주는 행위에 관한 권리(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는 인정되지 않았다.⁵⁾ 이 점에서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게 재생하거나 전달하는 자는 실연자등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해당 이용에 관계된 실연자등에 대한 대가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을 토대로, 저작권분과회에서는 이용자⁶⁾가 받을 영향에 배려하되, 실연자등의 권리 보호 및 대가 환원을 충실화한다는 관점에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검토를 진행하였다.

2) 검토 결과

가) 현황 변화 및 동향

일본 저작권법 제정 당시에는 실연자등에게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 실연자등에게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10개국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 찻집 등 업종에서의 상업용 음반 이용이 많지 않고 그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것 등을 고려해, 당분간 음반을 광범위하고 대량으로 이용하는 방송·유선방송에 한정해 실연자등의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법 제정 후 저작권접권에 관계된 조약 가입국이 점차 증가하였고,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도입한 국가도 급증하였다.⁷⁾ 또한, 점포 등에서의 상업용 음반 이용이 확대되었다.⁸⁾

덧붙여, 일본의 음악산업과 실연자등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도 생겼다. 세계 음악시장의 성장 추세와 맞물려 음원 시장도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기존의 유럽·미국 중심의 음악시장뿐 아니라 아시아 등의 음악시장

4) 이하는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掲注(3)의 내용을 정리·소개하는 것이다.

5) 일본은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및 「실연 및 음반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 조약」 가입 시에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상당하는 부분의 적용을 제외하였다(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掲注(3), 2-3頁).

6)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142개 국가·지역에서 도입(부분 도입 포함)하였고, OECD 국가에서는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36개국이 도입하였다는 설명으로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掲注(3), 4頁.

8) 모든 업종의 약 30%, 숙박업·음식서비스업의 약 50%, 생활 관련 서비스업·오락업의 약 40% 정도에서 음반 음원이 이용되고 있다(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掲注(3), 5頁).

성장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음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을 새로운 기간산업으로 인식하고, 해외 진출 목표를 정한 후 그 촉진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실연자에 대한 2차 사용료 등이나 음반제작자의 사용료 등 징수액이 감소하고, 신인 아티스트 수나 국내 음반 제작자 종업원 수가 감소하는 등 음악 분야의 발전과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인재 부족 등의 문제가 상정되고 있다.⁹⁾

이상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 배경에는 ①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이 없을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일본 실연자등의 상업용 음반이 이용되어도 일본 측에 대한 대가 환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②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도입하면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이 생기고, 일본 아티스트나 음악 업계가 세계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 ③ 아티스트 육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었다.

나) 기본적인 생각

일본 저작권법 제정 시에는 다른 국가의 상황, 국내에서의 영향이나 상업용 음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법제화를 보류했지만, 위 「① 현황 변화 및 동향」을 생각하면 국제적 제도와 조화를 도모하고, 실연자등에 대한 대가 환원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음악 분야의 해외 진출 촉진이라든지, 차세대 아티스트 등 육성·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국내 이용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 도입으로 인해 상업용 음반 이용이 위축되거나 음악 관련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형태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권리자 측에서도 이용자의 우려나 불안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절한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는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방안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권리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권리 주체로 하고, 권리 주체가 상업용 음반을 공중에게 재생하는 자¹⁰⁾ 또는 공중에게 전달하는 자¹¹⁾로부터 해당 상업용 음반에 관계된 2차 사용료를 받는 권리¹²⁾로 정할 수 있다. 해당 권리를 허락권이 아닌 2차 사용료 청구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내외 제도와 정합성¹³⁾과 저작물 공중 전달 저해 가능성¹⁴⁾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음반

9)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前掲注(3), 6頁.

10) CD나 다운로드한 전송 음원 등을 재생기기로 공중에게 재생해 들려주는 자 등을 말한다.

11) 방송되는 CD나 자동공중송신되는 전송 음원 등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게 전달해 들려주는 자 등을 말한다.

12) 구체적으로 실연자가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실연의 재생 또는 전달에 관한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와 음반 제작자가 상업용 음반에 관계된 음의 재생 또는 전달에 관한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3) 음반 연주권·실연권은 상업용 레코드가 본래 예정한 범위를 넘어 그 이용 효과가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음반의 2차적 이용에 관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연주권·공중전달권의 경우도 저작권자의 연주권 및 공중전달권처럼 비영리·무료 시 권리 제한 대상으로 한다. 이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접권 기간과 동일하게 상정한다.

② 권리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이다.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실연·음반이 이용된 실연자등에게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연자등이 이용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이용자가 지급하는 상대방인 실연자등을 확인해 지급하는 것은 비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를 생각할 때,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경우도 방송 2차 사용료의 경우(일본 저작권법 제95조 제5항 및 제97조 제3항)와 마찬가지로 권리 처리의 원활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지정단체 제도를 채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단체 지정 요건이나 지정단체와 권리자의 관계, 문화청 장관의 감독 체제 등도 방송 2차 사용료에 관계된 지정단체 제도(같은 법 제95조)와 같은 체제를 채용한다. 한편, 지정단체가 2차 사용료 청구권에 관계된 금액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제도로 참고해 단계적 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정 체제를 제시하였다. ① 지정단체는 그 권리 행사 시에 이용구분별 2차 사용료 금액과 실시일 등을 기재한 2차 사용료 규정을 작성하고, 해당 규정 작성 시에 미리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 의무를 부여한다. ② 지정단체는 2차 사용료 규정 작성 시에 해당 규정의 각 이용 구분에 해당하는 이용자 대표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때 그에 응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2차 사용료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지정단체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화청장이 협의의 개시·재개를 명할 수 있다). ③ 일정 기간이 지나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양 당사자가 문화청 장관에게 재정을 구할 수 있다. ④ 2차 사용료 규정은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지정단체는 2차 사용료 규정을 실시일 전에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함과 함께 공표해야 하며,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할 때 협의나 재정을 거쳐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⑤ 위 ①~④는 지정단체가 2차 사용료 규정을 변경하는 때도 동일하다.

라) 운용상 유의 사항

보고서에서는 실연자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실현과 이용자단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2차 사용료 규정 작성과 2차 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유의 사항을 언급하였다.

우선 2차 사용료 규정 작성에 관한 유의 사항으로는 ① 2차 사용료의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교섭에 따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운용에 있어 실연자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을 도모한다는 취지를 고려하면서 이용 형태나 이용 상황, 음악 저작권료 등 다른 저작권등사용료액과의 총액에 의한 영향, 물가 상황 등을 토대로 검토할 것, ② 사회적 상황 변화나 각 업계·업종 고유의 상황,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소규모사업자가 받는

이해되고 있으며, 국제협약이나 주요국에서도 보수청구권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이용한 방송·유선방송에 관한 2차 사용료를 받을 권리를 두고 있다.

14) 상업용 음반 이용에는 기본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포함되어 저작권자의 허락권이 작용하게 된다.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허락권으로 설정할 경우, 저작물 등의 전달을 담당하는 자인 실연자 등의 허락권도 작동하게 되며, 그 결과 권리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저작물의 공중 전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부담에 배려할 것, ③ 지정단체가 2차 사용료 규정을 정할 때는 각 업계·업종의 실태나 대상 사업 규모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 이용 상황을 고려하면서 요금 구분을 업계·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거나 면적·정원 수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등 사전에 각 업계·업종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해 검토할 것, ④ 규모 등이 특히 작은 사업이나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 계약·지급 등의 사무 일부를 업계단체가 대행 또는 일괄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 지급 면제나 감액 조치를 검토·실시할 것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2차 사용료 징수·분배에 관한 유의 사항으로는 ① 이용자가 간편하게 신청·지급하며 공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도 활용한 체제를 구축할 것,¹⁵⁾ ② 업무용 BGM 전송 서비스 제공사업자나 총괄단체와의 포괄계약 등을 통한 포괄징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③ 징수 시 제도에 따라 2차 사용료를 지급하는 자와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자가 생기는 등의 불공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업계단체나 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 등과 협력하고, 지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주지나 독촉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④ 분배의 경우 이용된 상업용 음반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실연자나 음반 제작자에게 정확하게 분배함과 함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할 것,¹⁶⁾ ⑤ 완전한 이용 보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실태에 기초한 분배를 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예도 참고하면서 분배의 정확성 향상을 도모하는 노력(업무용 BGM 전송 서비스에 관계된 데이터 등 다양한 통계 정보 이용 등)을 할 것을 지적하였다.

3) 향후 과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시에는 법 제도 구축뿐 아니라, 적절한 징수·분배 실현을 위한 대치를 마련·실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취지나 그 징수 등을 이용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접권이라는 제도의 존재나 의의, 저작자의 권리와 실연자등의 권리 차이, 실연자등을 둘러싼 환경이나 그 권리 보호 필요성 등 전제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이 기회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주지·계몽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여, 지정단체에서는 사업의 투명성 확보나 정책 목적과의 관계 관점에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징수·분배 상황, 해외와의 수지 상황 등에 대하여 정보 공시나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연주를 위해 필요한 매체 복제까지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인식이 심의 과정에서 공유되었다. 정부와 관련 권리자 단체는 집중관리 축진을 포함해 권리 처리의 원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함과 함께, 이러한 매체 복제는 많은 경우 연주를 위한 불가결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음반

15) 특히 개별 징수 시에는 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와의 연계 등 이용자의 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검토·조정할 것을 지적하였다.

16) 이용자가 간편하게 이용 상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관리사업자에 대한 보고서 활용이나 전자적 보고 체계 구축, 재생된 악곡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다.

연주권·공중전달권을 도입하되, 준비적 복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없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등, 이용자 측도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당 권리의 운용을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2026년 저작권법 개정

2026년 6월 17일 제221회 정기국회에서, 아티스트 등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을 도모함과 함께 음악 분야의 해외 진출 촉진을 목표로 저작권법 개정이 성립하였다.¹⁷⁾ 이 개정의 핵심은 음악 CD나 인터넷 전송 음원 등(상업용 음반 등)이 점포·호텔·레스토랑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용된 때에 실연자등이 2차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성질과 내용

개정법은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을 허락권이 아닌 2차 사용료 청구권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제25기 저작권분과회 보고서의 지적(국내외 제도와 의 정합성과 저작물 공중 전달 저해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권리 주체로 규정하고, 공중 재생과 공중 전달에 대응하는 다음의 표와 같은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상업용 음반의 공중 재생 또는 공중 전달 시에는 종전처럼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 등)에게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에 더해, 개정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실연자·음반 제작자)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법상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구조¹⁸⁾〉

권리 주체	이용 형태	내용	보호기간
실연자	공중 재생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그 실연을 공중에 재생한 자는 해당 실연에 관계된 실연자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법 제95조의2)	실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70년
실연자	공중 전달	상업용 음반에 녹음된 실연 중 공중송신된 것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게 전달한 자는 해당 실연에 관계된 실연자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법 제95조의3)	실연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70년

17) 文部科学省,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参议院本会議で可決され成立しました(2026年6月17日); 文部科学省,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https://www.mext.go.jp/content/20260617-mxt_hourei-000050520-1-1.pdf.

18) 梅澤隼, “著作権法改正案の可決・成立—「レコード演奏・伝達権」の創設について”, 『M&P Legal Note』No.11-4(2026).

음반 제작자	공중 재생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 그 음반에 관계된 음을 공중에 재생한 자는 그 음반에 관계된 음반 제작자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법 제97조의2)	음반이 발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70년
음반 제작자	공중 전달	상업용 음반에 관계된 음 중 공중송신된 것을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게 전달한 자는 그 음반에 관계된 음반 제작자에게 2차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법 제97조의3)	음반이 발행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70년

한편, 저작권자의 연주권 및 공중전달권의 경우 비영리·무료 연주나 비영리·무료 방송 등의 전달에 관계된 권리제한 규정(일본 저작권법 제38조 제1항·제3항 등)이 존재하는 것과의 균형 및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에 대해서도 일정 경우 적용 제외를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음반 연주권에 대해서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재생한 경우 또는 ② 제102조 제1항에서 저작인접권에 준용되는 저작권의 권리제한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재생한 경우 적용 제외가 인정된다. 음반 전달권에 대해서는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요금을 받지 않고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혹은 ②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이용해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또는 ③ 제102조 제1항에서 저작인접권에 준용되는 저작권의 권리제한 규정에 따라 공중에게 전달한 경우 적용 제외가 인정된다.

2) 권리 행사 체계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이용된 개별 실연·음반에 대해, 개별 실연자등에게 2차 사용료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연자등이 개별적으로 이용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용자가 관련 권리자를 확인하는 것은 비용이나 절차적 부담 등을 생각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서 개정법은 방송 2차 사용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단체 제도¹⁹⁾를 채용하였다(개정법 제95조의2 제3항, 제95조의3 제3항, 제97조의2 제3항 및 제97조의3 제3항이 준용하는 제95조 제5항).

다만,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경우는 방송 2차 사용료의 경우(매년 지정단체와 방송사업자 등이 협의해 금액을 정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경우는 문화청 장관의 재정 요구)와 다른 사용료 조정 방식을 택하였다. 앞서 설명한 제25기 저작권분과회 논의(상기 2. 2) 다) 참고)를 고려해 단계적 조정 방식을 택한 것이다.²⁰⁾ 즉, ① 지정단체는 2차 사용료 액 등을 포함한 2차 사용료 규정(안)을 작성해 공표해야 하고, ② 해당 안에 대해

19)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있는 경우는 그 지정단체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 개정법 제103조의2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3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4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5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6에서는 신고한 2차 사용료 규정에 관계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7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에 관한 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103조의8에서는 2차 사용료 규정에 관한 사항의 정령 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202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https://www.mext.go.jp/content/20260616-mxt_hourei-000050520-3-1.pdf).

이용자 대표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대응해야 하며, ③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신청하는 등 단계적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④ ②의 협의 요청이 없는 때 또는 협의가 성립하거나 재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2차 사용료 규정을 문화청 장관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공표해야 한다.²¹⁾ 이상은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경우 이용자 특징이 곤란하고, 그 수·종별·규모가 매우 다양하며, 소규모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이 상정되는 점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지정단체 간 협의로 사용료를 정하는 게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3) 시행기일 및 준비행위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해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개정법 부칙 제1조 본문).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한 지정단체·2차 사용료 규정·협의 절차 등의 조정 관련 대응에 상당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배려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개정법 부칙 제4조)과 정령에 대한 위임에 관한 규정(개정법 부칙 제5조)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였다(개정법 부칙 제1조 단서).

개정법 부칙 제4조는 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해, 시행일 전에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 문화청 장관은 시행일 전이라도 지정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²²⁾ ② 지정단체는 시행일 전이라도 개정법의 규정에 따라 2차 사용료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의 경우에도 이용자 대표와의 협의라든지, 문화청 장관의 재정 신청, 신고 등이 상정된다.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재정의 신청·명령·재정·신고 등도 시행일 이후는 개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마치며

개정법의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은 단순히 실연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 전반의 수익 분배 구조와 이용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써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리자 측에서 보면,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시 국내 이용에 관계된 대가 환원에 더해,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해 이를 도입한 외국으로부터의 대가 환원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일본 실연자들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 및 수익 회수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권리 보호 및 수익 회수 가능성 제고는 일본 실연자들의 해외 진출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은 아티스트와 프로덕션 간의 계약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양자 간의 매니지먼트 계약에는 저작권접권의 귀속에 관한 정함이 담겨 있는데, 해당 권리가 도입될 경우 그에

21)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概要, https://www.mext.go.jp/content/20260617-mxt_hourei-000050520-1-1.pdf.

22) 문화청 장관이 개정법 시행 전에 지정단체를 지정한 경우는 시행일 이후 개정법에 근거한 지정으로 본다.

따른 2차 사용료 청구권 취급에 관한 규정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즉, 권리자의 경우 새로운 대가 환원 수단이 생기는 한편, 매니지먼트 계약 재검토 등 새로운 과제가 생긴다.

이용자 측에서 보면,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 도입 시 추가적인 비용·절차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저작권자에 대한 사용료(JASRAC 등에 대한 지급) 외에, 실연자등에 대한 2차 사용료가 새롭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2차 사용료 액을 포함한 2차 사용료 규정 마련에 있어 지정단체에 대한 신청이나 협의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소규모사업자 등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면이 있다. 일본 참의원 문교과학위원회는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한 부대결의에서 음식점·소매업자 등 소규모 점포와 공익적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스포츠 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점포 면적이나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한 사용료 설정이나 사용료 감액·면제, 단계적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완화 방안)를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을 생각하면,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의 실효적 작동·정착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이용자 모두를 염두에 둔 철저한 준비와 시행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한편, 권리자·이용자도 지정단체 지정, 2차 사용료 규정(안)의 동향 및 협의 절차 등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관여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음반 연주권·공중전달권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해당 제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지켜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 자료

- 文化審議会,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時代に対応した著作権制度・政策の在り方について第一次答申(案)」(令和5年2月).
-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報告書」(令和8年3月12日).
- 梅澤隼, “著作権法改正案の可決・成立—「レコード演奏・伝達権」の創設について”, 「M&P Legal Note」 No.11-4(2026).
- 文部科学省,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参議院本会議で可決され成立しました(2026年6月17日)
- https://www.mext.go.jp/b_menu/houan/an/detail/mext_00061.html
- <https://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bunkakai/>